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6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1.

발 의 자 : 백혜련 · 부승찬 · 박지원
문진석 · 남인순 · 용혜인
민홍철 · 이강일 · 이수진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,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(안 제365조제1항 및 제2항).

나. 18세 미만의 아동은 비상계엄시 군사법원에서 단심제로 재판을 받

는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34조).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- 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,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

제5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”을 “사형을 선고한 경우 또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,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5조 (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) ① <u>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,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(信憑)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(眞正)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,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.	제365조 (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) ① <u>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,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</u> ② <삭 제>

③ ~ ⑥ (생략) 제534조 (특례규정)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</u>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5.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534조 (특례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<u>사형을 선고한 경우 또는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</u>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
---	---